

1. 개정이유

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(이하 전산관리번호)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891호, 2024. 1. 2. 공포, 2024.7.3. 시행)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, 중앙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전산관리번호 부여방법, 유효기간, 주기적 점검 의무 등 규정

(안 제1조의3 신설)

- 1) 전산관리번호 부여방법 및 전산관리번호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함.
- 2) 보장기관에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적정 한지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확인해야하는 의무를 부여함.

나. 중앙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2조의4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3을 제1조의4로 하고,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3(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방법 등) ① 사회보장 전산관리
번호는 출생연도, 성별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숫자 또는 문자가 포함된 13
자리로 부여한다.

②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유효기간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
부여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
한 경우 1년 이내 단위로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.

③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
적절한지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보장 전산관리
번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제2조의4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
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31조에 따른 중앙 사회서비스원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조의3은 2024년
7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<u>제1조의3(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방법 등) 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출생연도, 성별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숫자 또는 문자가 포함된 13자리로 부여한다.</u> <u>②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유효기간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 단위로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.</u> <u>③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.</u> <u>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</u>
제1조의3 (생략)	제1조의4 (현행 제1조의3과 같음)
제2조의4(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	제2조의4(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

의 이용) ①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 1. ~ 5. (생략) <u><신 설></u> 6. 7. (생략) ②·③ (생략)	의 이용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른 중앙 사회서비스원 7. 8. (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
--	--